

냉전검열의 변용, 파국, 재편*

— 1980년대 출판검열과 책의 운명

李奉範**

- | | |
|-------------------------|-------------------------|
| I. 1980년대와 냉전검열(사) | IV. 1987년 민주화, 책의 해방과 그 |
| II. 제5공화국 검열의 특징 몇 장면 | 역설~결론을 대신하여 |
| III. 1980년대 도서검열과 책의 운명 | |

• 국문초록

이 글은 냉전검열사의 관점에서 출판(도서) 검열과 금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1980년대 냉전검열의 파국과 그 재편의 진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대 책의 문화사에 대한 거시적인 조감이다. 제5공화국 정권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검열 유제가 계승되는 한편 법제의 확충, 일련의 자율화·개방화 조치 등 새로운 검열기예를 입안·시행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통제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의 기조는 세계 냉전체제의 데탕트 추세, 미국의 거세진 지적재산권 압력, 사회변혁 운동의 고조와 문화적 민주주의 요구의 팽배, 무크지를 비롯한 대항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검열체제 교란 등 대내외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배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웠다. 검열의 강화/유연화의 교체·반복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검열의 정당성 및 사회문화적 통제 효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돼 온 냉전검열의 총체적 파국을 초래했다. 이로부터 촉발된 냉전검열의 내파, 즉 변용, 파국, 재편의 압축적 분출과 그 해결을 둘러싼 쟁투는 냉전검열의 해체와 탈냉전기 검열체제로의 변용·재편을 동

* 이 논문은 2023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5851)

** 성균관대 초빙교수

시적으로 추동하는 동력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점이 금서(책)의 존재방식이다. 당대 출판 검열은 국가보안법,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언론기본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적 기제와 이에 근거한 출판사 등록제도와 납본제도를 활용한 미디어 통제가 주된 방식이었다. 텍스트생산(자)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물론 법적 규제의 공백지대는 과도한 행정단속(사후검열)으로 제어했다. 서점이 검열의 표적으로 새롭게 대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로 금서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 특히 1985년 유화국면의 철회를 기점으로 공안기관이 출판검열을 주도하는 가운데 필화와 사법적 이적도서가 급증했다. 식민지 출판경찰제도의 복사판이었다. 그것은 불온출판물에 대한 공안당국의 포괄적인 자의성이 전폭적으로 개입될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출판통제는 금제의 유효성이 상실된 금서의 해제와 동시에 냉전 사상전의 최후적 대결 구도에서 불온성(좌경·용공)을 과격 혁명이론 및 급진좌경이론 서적으로 축소·집약시켜 민주화운동과 계급운동의 분리주의에 입각해 후자의 반체제성을 집중적으로 분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그 흐름은 1987년을 경과하며 오히려 확대 강화되기에 이른다. 제6공화국의 검열체제가 보수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공안기관의 출판경찰제도가 존재했던 것이다. 요컨대 1980년대 금서의 양산은 출판물의 양적 팽창이란 객관적 조건 속에서 검열기관들의 좌경·용공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에 따른 무분별한 금서 지정, 출판경찰제도의 부활로 인한 사법적 이적 도서의 급증과 이에 대응한 출판주체들의 의도된 반검열이 교차하며 동반상승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 같은 금서의 양면성과 생산 경로의 다양성은 당대 책의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주제어 : 냉전검열, 금서, 이적도서, 출판검열, 등록제도, 납본제도, 출판경찰제도, 국가보안법, 책, 용공, 좌경, 문화공보부, 공연윤리위원회, 불온출판물, 서점

I. 1980년대와 냉전검열(사)

1987년 12월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실존주의 희곡 <더러운 손*Les mains sales*>이 극단 신희에 의해 한국연극사에서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다(최성민 역, 채승훈 연출, 바탕골소극장). 1948년 발표 당시 전후 최고의 희곡으로 파리 앙트완느 극장에서 초연된 뒤 런던(<정열의 범죄>로 개제)과 뉴욕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냉전 양 진영으로부터 반공산주의 연극으로 찬사/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이 작품은 한국전쟁기 <붉은 장갑>으로 개제되어 대구 문화극장에서 상연된(김광주 역, 이진순 연출, 극단 신희, 1951.11.29) 이래 장기간 공연 금지되었다가 再상연된 것이다.¹⁾ 그 과정에서 1966년 <더러운 손>이란 제목으로 일시 상연된 적이 있으나(극단 사계, 최성민 역, 장소암 연출, 국립극장, 1966.12.7),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의 검열로 인해 공연이 규제되다가 6·29선언 이후 검열완화 국면에서 공륜의 심의 통과를 거쳐(1987.10.13, 미성년자관람불가) 비로소 무대화가 가능했다. 1966년 공연이 금지되었다가 재개된 것인지 아니면 공륜 심의 이전에는 자유롭게 무대화가 가능했는지는 지금으로선 확인이 어렵다. 다만 공륜에 의해 공연이 불허되었던 것은 분명하다.²⁾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러운 손』이 1960년 문고본으로 번역·출판되어(최성민 역, 양문사/1974년 서문당에서 재간) 널리 시판·보급된 바 있고, 사르트르의 또 다른 단편 「벽」이 세 차례 공연되었으며(소극장69, 김영송 연출, 1969.5/ 극단 전위무대, 1976.7/극단 예장, 1976.10) 영화 <벽>(세르제 루에 감독, 1972년 불란서문화원)도 상영된 점을 미루어 보면, 작가의 신원이 금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의 대표작 『구토』(양병식 역, 정음사, 1953)를 비롯하여 사르

1) 한국에서는 작품 번역에 앞서 공산주의 배격을 테마로 한 실존주의 작품으로(『자유신문』, 1948.10.31), 비극성에 초점을 준 프랑스 비평문의 번역을 통해서(로베르 캠프, 「사르트르의 희곡 '더러운 손'에 관하여」, 『민성』, 1949.1, 60~62면) 처음 소개되었는데, 신희이 공연을 계획하고 연습 중에 한국전쟁으로 무산된(백성희, 「연극에 산다」, 『동아일보』, 1979.6.15) 뒤 <붉은 장갑>으로 개제되어 전시에 국방부정훈국의 후원 아래 초연되기에 이른다. 당시 이 연극은 실존주의 철학과 부조리극 수용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붉은 장갑>이란 표제는 뉴욕에서 1948년 9월부터 장기 공연될 때 개제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2) 「연극도 정치소재 열풍」, 『경향신문』, 1987.11.24.

트르 저작의 국내 번역(출판)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전후 실존주의(문학)론의 수용·논쟁과 1960년대 후반 참여문학논쟁에서 그의 양가주망론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냉전기 한국지성사·문학사를 관통하며 빈번하게 호명된 대표적인 작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의아하다. 그러면 <더러운 손>의 내용 때문이었을까?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이 희곡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점령한 동유럽의 가상국가('Illyrie')에서 공산당의 권력 쟁탈을 둘러싼 내분과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다 죽음을 선택한 지식인 당원('Hugo')의 행동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전체주의(소비에트체제 및 파시즘) 비판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검열상 크게 문제가 될 소지도 없었다.

오히려 이 희곡이 CIA주도의 문화냉전(문화예술을 활용한 이념정보전) 전략이 개입하면서 반공산주의 연극(냉전텍스트)으로 편향되어 자유세계에 선전·전파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반공연극으로 수용되어 전시 사상전의 콘텐츠로 초연될 수 있었다. 동시기 비슷한 기조의 냉전텍스트들의 번역수용사, 예컨대 공산당에 입당 또는 동조한 뒤 전향한 서구지성들의 에세이 *The God That Failed*(1949)가 공산주의(소비에트체제) 실패를 입증해주는 결정적 증거로 변용되어 1952년 번역 출판돼 전시 심리전텍스트로 활용된 뒤 1980년대까지 네 차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전향텍스트로 번역된 사실, 또 주미소련상무관 빅토르 크라브첸코의 망명수기 *I Chose Freedom*(1946)이 1948년 번역되어 대공심리전(대북라디오심리전 콘텐츠) 및 1951년 문고본으로 재간되어 전시 사상전의 프로파간다 자료로 활용된 이후 1953년 시공관에서 상연(극단 자유극회, 허석 연출, 1953.9.16) 및 1968년 국립극장에서 상연된 사실(승공극단 자유전선, 이진순 연출, 1968.2.7) 등과 확연히 대조되는 지점이다.³⁾ 이로 볼 때 사르트르의 사상성, 즉 피카소와 더불어 사르트르가 공산당원으로 소비에트를 변호하는 좌파지식인이라는 편향된 인식, 그리고 그의 실존철학과 참여문학론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 이론으로 오해되어 수용되는 지적 풍토에서 <더러운 손>이 불온연극으로 규정·배척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소비에트체제를 악마화하기에 매우 유용한 냉전텍스트의 공연 금지, 냉전검열의 맹목성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3) 이에 관해서는 이봉범,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대동문화연구』 11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참조.

중국연극사에서 리얼리즘의 지평을 최초로 개척한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차오위의 1933년 작 〈뇌우(雷雨)〉의 공연사도 마찬가지였다. 〈뇌우〉가 1988년 10월 16일 한국연극사에서 네 번째로 공연된다(국립극단 제134회 정기공연작, 김광주 역, 이해랑 연출, 국립극장). 해방직후 김광주가 번역·출판했고(선문사, 1946.5) 곧바로 10월 극단 낙랑극회에 의해 초연된(이서향 연출, 단성사) 뒤 1950년 6월 6일 국립극단 제2회 정기공연작으로 무대화되었다(부민관). 15일 간 7만5천의 관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황을 이루었는데, 당시 서울 인구(40여 만 명)의 약 20%가 관람한 셈이다. 이 같은 화제의 무대기록을 남긴 뒤 전시 부산과 대구에서 그리고 환도 직후 신흥에 의해 상연된(유치진 연출, 1954.7) 이래 장기간 공연이 금지된다. 주된 이유는 차오위가 공산권 작가였기 때문이다. 1950년 차오위가 홍콩으로 망명했다는 풍문이 전해져 한국전쟁 전까지는 그의 희곡이 공연 가능했으나 전후 敵性을 절대 원칙으로 한 불온검열의 강화 속에 공연이 금지된 것이다. 〈뇌우〉뿐만이 아니다. 해방기 외국 희곡(작가)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공연되었던 차오위의 4부작 〈뇌우〉, 이를테면 극단 민중극장의 〈原野(일명 탈주범)〉(김광주 역, 안영일 연출, 1947.1.28. 수도극장), 극단 신지극사의 〈태양이 그리워(원제:日出)〉(김광주 역, 이진순 연출, 1947.10.17. 국도극장), 극단 여인소극장의 〈매미는 껍질을 벗는다(원제:蛻變)〉(김광주 역, 박노경 연출, 1950.1.30. 중화민국주한영사관 후원) 등도 공연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1988년 이후에야 再상연이 가능했다.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적성국가라는 이유 외에도 誤認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다. 1954년 공연은 차오위가 중국작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했으며(공산당 입당이 확인되면서 공연이 취소된다), 또 〈뇌우〉가 루쉰의 작품으로 오인되어 1960년대 초까지 금지를 당연시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뇌우〉를 윤색한 영화 〈운

4) 해방직후의 공연에서도 〈뇌우〉를 치정극 또는 波倫劇으로 간주해 극단 안팎으로 상연을 맹렬하게 반대·비난하는 의견이 거셌으며(박민천, 「비극의 연원~〈뇌우〉 상연에 관한 노트」(『경향신문』, 1950.6.3~4). 〈태양이 그리워(일출)〉는 극단 新地劇社가 조선연극동맹과 연관된 좌파단체라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동 극단이 정치적·당파적 공연활동과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상연이 이루어지는 곡절을 겪었다. 이 작품이 극예술가협회에서 유치진 연출로 공연 예정이라는 보도기사로 미루어 볼 때(『민중일보』, 1947.6.29) 공연주체를 둘러싼 연극계의 좌우 갈등이 관여된 것으로 추측된다. 차오위 〈뇌우〉 4부작의 작품성과 중국에서의 공연사에 대해서는 김하림·유중하·이주로, 『중국 현대문학의 이해』, 한길사, 1991, 251~258면.

명의 여인>(성보영화사, 강원주 감독, 1957.7.13. 중앙극장)이 루신의 작품으로 오인되어 검열과정에서 절반 이상인 260컷이 삭제를 당하기도 했다.⁵⁾ 그 뒤 적성 국가라는 작가 신원 문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검열(1972.9.6. 심의)과 1980년대 서너 차례 공륜의 검열(1983.5, 1986.12~자진철회 등)에서 불허(반려)되다가 공산권예술 수입 개방과 판금도서의 해제 조치 및 희곡사전심사제도의 완전 폐지 방침으로 3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1988.7.22. 심의통과).⁶⁾ 공산권 희곡에 대한 규제 완화의 첫 심의통과 연극이었다. 원작의 (번역)시판이 공식 허용된 국면에서 공륜의 심의를 둘러싸고 연극적으로 뛰어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국립극단의 논리와 선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연극계의 여론 속에서 공산권국가의 작품인 만큼 관계당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는 공륜의 입장이 엇갈렸다. 당시 비등한 검열제도 폐지 및 공륜 해체론에 대한 공륜의 강경 대응이 반영된 갈등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련의 현역 희곡작가의 작품 <아 체르노빌>(민중극단)도 공륜에 심의를 신청했다가 공연을 유보해달라는 문화공보부의 요청을 받고 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1988.2.17).

이 두 희곡의 한국수용사(번역 및 공연)는 40여 년에 걸친 냉전검열사의 진상을 집약해 주는 사례다. 금제/해제의 역사적 과정 뿐 아니라 그 전개에 안팎에 축적된 냉전검열의 특징들, 이를테면 검열대상의 무차별성(광범위성), 검열기준의 비체계성(불명확성 및 초법성), 사상검열의 맹목성 및 정략성의 장기 지속 등을 어렵게 않게 간취할 수 있다. 도서의 경우는 그 양상이 훨씬 복잡하다. 30년 동안 전력을 기울여 세 권의 역작으로 완성한 E·H 카(Carr)의 『소비에트 러시아사』(1950~51)의 수용 과정을 예로 들면, 그 1권에 해당하는 『볼셰비키 혁명, 1917~1950』이 유신선포 후 문화공보부가 출판계 정화라는 명분으로 작성한 <불법불량도서목록>(152종, 1973.12)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시판이 금지된다. 법적 근거에 따른

5) 이에 관해서는 이봉범, 『한국의 냉전문화사』, 소명출판, 2023, 200~202면 참조.

6) 1987년 10월 19일 출판활성화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판금(종용)도서 650종 가운데 431종은 시판을 허용, 181종은 실정법(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찰에 사법심사 의뢰, 월북작가 및 공산권작가의 문학작품 38종은 판단을 유보했는데, 1988년 '7·7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 북한을 제외한 공산권국가의 순수예술작품이 해금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뇌우』, 『家』(巴金)도 공연의 길이 열린다. 이때 1967년 문학작품으로는 처음 판례상 이적도서로 규정된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도 시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1985.2.10)된 뒤 해금되었다.

외서에 대한 금서 조치가 공식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목록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1969~73년 판매부적절의 이유로 제재를 건의한 국내도서 108종과 1972년부터 문화공보부 내 도서검토전문위원회가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해 판매 금지시킨 외서 77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대개 외설·저속의 간행물이었고, 후자는 일본 좌익계 내지 북한학자의 일역서와 J·슈페터, C·브린튼, E·H 카, D·바네트, Z·브레진스키, W·에벤스타인 등의 구미도서로 각 서점과 출판계에 목록을 배포·비치시켜 판매중지를 시달한 것이다. 일본좌익계 출판사(未來社, 靑木書店, 三一書房 등)의 출판물이 다수를 점한 특징이 있다.⁷⁾ 카의 『볼셰비키 혁명』과 『일국 내의 사회주의』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전 카의 『평화의 조건』(차기벽 역, 신아사, 1959), 『민족주의론』(이원우 역, 범조사, 1959), 『역사란 무엇인가』(길현모 역, 탐구당, 1966) 등이 무리 없이 번역·출판된 것에 비해 이 저작이 러시아혁명이란 금기를 다루었고 소비에트체제를 사회주의적 근대화프로젝트로 파악하고 있는 카의 관점이 서구 볼셰비키역사학자들로부터 이념 공세에 시달렸던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다. 그래도 음성적 차원의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절차적 문제는 논란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후의 과정이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자율화 조치 일환으로 이념서적의 출간을 허용한 유화 국면에서 『러시아 혁명: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1917~1929』(신계륜 역, 나남출판, 1983), 『볼셰비키 혁명사』(이지원 역, 화다, 1985) 등 두 차례 번역·출판된다. 하지만 곧바로 좌익출판물(용공도서)로 규정되어 판금된 뒤

7) 외국간행물(도서)의 수입·배포에 관한 규정도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강화되는데 주로 행정입법상의 규제조항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73.2)을 통해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의 허가 규정과 외국도서 수입업(자)의 등록 규정이 각각 강화되고 그에 따라 사무처리요강(1968.12, 문공부예규 제1호), 시행규칙(1976.4, 문공부령 제50호) 등을 통해 수입업의 허가 기준, 수입추천의 기준, 납본 규정 등이 엄격해진다. 외국도서의 경우 이때 처음으로 수입 및 배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명문화되는데(제4조 외서수입업자의 등록제, 제5조 납본제, 제7조 배포 중지 및 내용삭제의 명령), 판매용과 실수요자용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규정을 둔다. 전체적으로 국헌 문란과 풍속피란을 허가기준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불온물의 승인 조항을 엄격하게 세분하는 동시에 판매용 도서의 경우는 공산주의자 및 추종자가 저작한 것과 주로 공산주의 저작을 간행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허가의 기준으로 추가한 특징이 있다. 덧붙여 1980년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1981.6, 대통령령 제10326호) 도서수입추천 시 분야별로 수입량을 문공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1987년 10월 출판활성화조치 때 사법심사의뢰 도서로 분류돼 판금 해제가 유보되는 과정을 거쳐 1990년대에 시판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서에 대한 검열당국의 집요한 출판탄압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볼셰비키 혁명사』는 <문제도서 목록(시판 및 재판중지 중용 문제도서)>에 포함되어 시판금지 대상이었고(1985. 6.30),⁸⁾ 또한 두 번에 걸쳐 사법상 이적도서로 확정 판결되었다(1982년 및 1987년).⁹⁾ 1985년 5월 이념서적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대상이기도 했다. 카의 또 다른 저서 『혁명의 연구』(김현일 역, 풀빛, 1983)도 시판중지 문제도서 및 사법심사의뢰 대상 도서로 취급되었다. 실정법(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식자층조차 카가 소비에트러시아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냉전 해체 후 1991년 국가보안법의 개정, 그 가운데 구법 제2조2항의 국외공산계열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소련, 중국, 베트남 등 舊공산권국가 창작물의 출판이 가능해졌고, 또 오랫동안 사상검열의 잣대로 남용된 제7조1(“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의 삭제로 무분별한 용공·이적 규제 및 처벌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으로써 이적도서들이 해방되기에 이른다.

카의 저작을 예로 든 것은 냉전기 출판검열로 양산된 금서·이적도서가 적성, 즉

-
- 8)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탄압백서』, 1987.6, ‘부록’ 119면. 카의 『볼셰비키 혁명사』는 대학생들이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물증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경희대생 김 모 씨는 『볼셰비키 혁명사』,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적 평화론』(서음출판사, 1983)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입증 증거로 채택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2년 재심청구 무죄).
- 9) 1982년(대검찰청,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공안자료집 제20권)』, 1996)과 1987년(법원·검찰,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도서, 유인물) 목록』, 1999)에 명시되어 있다. 1982년의 판결은 이 도서가 기 출판된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원서는 1970년대에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외서판매 서점이던 진흥문화사(당주동 소재)의 인문·사회과학 종합도서목록 안내를 보면(『창작과비평』, 1979년 봄호, 378~379면), 카의 *A History of Soviet Russia(1917~1923)*가 적시되어 있다(분류:WH~6). 이 목록의 63종 외서는 1970~80년대 금서로 지정된 프란츠 파농, 마르크제, 루카치, 에리히 프롬, 務台理作 등의 저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번역본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외서(원서)가 외서수입 서점을 매개로 널리 판매·수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권국가 작가·저작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냉전기 사상검열의 기초를 고려하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 그람시, 루쉰 등의 저작이 거의 모두 판금대상(또는 이적도서)이 된 것은 수궁이 가나, 카를 비롯해 H·마르크제, F·파농, B·브레히트, G·루카치, E·프롬, R·록셈부르크 등의 경우 적성과 거리가 있는 작가 또는 저작임에도 일부는 허용되고 또 다른 상당수는 1989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이적도서로 묶이는 현상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가령 파농의 경우 판금도서였던 『혁명의 사회학:알제리 민족해방운동 연구』(한마당, 1981)은 판금 해제되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광민사, 1979)은 사법심사가 의뢰되었고, 마르크제의 경우 『위대한 거부』(광민사, 1979), 『예술과 혁명』(풀빛, 1982)은 판금 해제되나 『이성과 혁명』(중원문화, 1984), 『해방론』(청하, 1984)은 이적도서로 지속된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도 1981년 이적도서로 확정 판결된 뒤 그대로 유지되었다. C·라이트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녹두, 1985)도 출판되자마자 시판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1961년판 『들어라 양키들아~큐바의 소리』(신일철 역, 정향사)는 이와 무관했으며,¹⁰⁾ 그의 『마르크스주의자들』(한길사, 1982)은 정부의 이념서적 출간 허용조치 직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무분별한 금서 지정과 이적도서 판결이 1980년대에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사회과학분야의 외서(번역서)가 대중을 이루나 국내저작물의 상당수도 문제도서로 지정되어 시판 또는 재판이 금지된다. 1970년대 유신체제, 특히 긴급조치 시기 문학작품 위주의 판금 지정이 공식적(합법적)으로 시행·공표된 바 있는데, 정부 비판적 출판의 원천봉쇄 결과로 그 규모가 45여종 정도로 많지 않았다.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등 그중 극히 일부가 10·26정변 후 계엄사령부의 (재)검열을 통해서 시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¹¹⁾ 대체로 판금 상태가 유지된 데다 제5공화

10) 『들어라 양키들아 Listen Yankee: The Revolution in Cuba』는 4·19혁명과 5·16쿠데타가 교차되는 시점에 번역됨으로써 당시 팽배하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가운데 특히 김수영을 비롯해 지식인·대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CIA를 비롯한 관제적 보도와 대조되는 쿠바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와 교훈을 준다는 지적처럼(『조선일보』, 1961.4.28), 이 책을 통해 획득된 미국에 대한 인식의 상대화는 냉전, 남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연쇄되면서 세계사적 시야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이만열, 「들어라 양키들아~미국의 진짜 얼굴을 보다」, 『경향신문』, 2015.8.3).

국 시기에 시(재)판 금지도서가 폭증하면서 금서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기에 이른다. 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독서는 범죄가 되면서 사유와 해석이 거세된 『화씨 451』(R·브래드버리, 1953)의 디스토피아적 공상 세계에 방불한 현실이 1980년대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금서 전성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도서검열의 경우 법제의 미비로 인해 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제26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제1조44) 등 관계법령의 무차별적 적용에 따른 과도한 행정규제로 말미암아 검열의 절차적 정당성, 비능률성, 효력의 제한이 불가피했다. 검열당국의 이념서적에 대한 규제/해금, 개방/제한의 되풀이가 이를 더 부추겼다.

둘째, 사회변혁 운동~지식(학술)~출판의 연계가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점점으로 강화됨으로써 기존 미디어통제 위주의 간접검열의 효용을 상당부분 무력화시킨다. 정 기간행물을 비롯한 제도권 매체는 순치했으되 무크, 유인물, 팸플릿 등과 같은 대항매체가 등장해 출판검열을 교란시키며 급진주의적 저항 이념의 저수지가 된다. 전자복사기의 대량 보급으로 책 1권은 곧 백 권이 되는 시대, 검열이 전자복사기를 당해낼 수 없는 형국이었다. 1980년대에 급증한 이적표현물에서 도서 못지않게 유인물이 비약적으로 증대한 가운데 유인물을 포함한 게릴라매체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새로운 표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조로 치달았던 권위주의적 출판검열의 역습이다. 금서의 양산이 이 같은 역습의 부산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냉전검열의 파국과 보수적인 재편이 금서 양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냉전분단의 규율 속에 견고하게 유지되던 냉전의 벽, 사상의 벽이 무너지면서 책의 해방이 도래했다. 냉전기 한국사회의 가장 불온한 금기로 간주되던 월북 작가(예술가)의 작품이 해금되고 북한을 제외한 공산권국가에 술이 모두 개방되는 문화의 봄을 성취했으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문화관련 악법

11) 특이한 점은 긴급조치 시기 금서였던 한길사 출판물들이 계엄사의 검열을 통과해 시판된다는 사실이다. 『우상과 이성』,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송건호), 『민족경제론』(박현채),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 등이 1980년 잠깐 동안의 서울의 봄 시기에 출판사가 판금서 복권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계엄사의 검열을 거쳐 빛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필자(논문) 교체, 부분 수정 및 삭제 등이 수반되었다(김연호, 『책의 탄생(II)』, 한길사, 1997, 43면, 359~374면). 계엄사의 검열필을 받은 서적들에 한해 문제도서 목록에서 시판 가능한 것으로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다. 이문구의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못 하나』(신인사, 1980)도 같은 경우였다.

하나도 개폐하지 못한 채 문화민주화가 좌절되면서 책은 더 강력한 검열의 칼날과 마주해야 했다.¹²⁾ 제6공화국 2년 동안에 제5공화국의 2배나 되는 출판인들이 구속되고 14만 권의 도서가 압수되었으며 출판탄압의 기조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출판사(인)에 대한 인신 구속과 출판물 압수 위주로 전환된다.¹³⁾ 남한에서 금기의 사상과 지식 또는 그 주체들은 假釋放 된 것에 불과했다.¹⁴⁾ 탈냉전기에 사상검열이 역으로 최절정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검열 및 탄압의 주체도 문화공보부(문화부)보다는 공안기관(검·경과 안기부)이 중심이 된다. 책의 생사여탈(해금/규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간자율기구, 즉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축소된다(1989년 (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 공룡이 1996년 영화사전심의 위원 결정까지 영화계(검열)의 실제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민주화의 과실이 가져온 역설이다. 더욱이 민주화의 신국면에서 독재/민주화 세력으로 비교적 단일했던 대결전선이 변혁운동론의 다기한 분화·대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내전 상태가 초래된 가운데 책이 치열한 사상투쟁의 장소로 대두하는 상황은 공안기관의 불온검열을 강제(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실제 좌경세력 척결을 위해 설치된 공안합동수사본부(1989.4), 시국관련 서적·문건들의 용공이적성 여부를 감정했던 경찰 산하의 공안문제연구소(1988.10) 등 공안기관이 출판물에 대한 검열(분석, 감정 등)을 주도했다.¹⁵⁾ 이들 기구의 적법성 시비가 불거지자 1997년에는 대검찰청에 ‘민주이념연구소’를 설치하여 공안기관의 이적표현물 수사에 대해 최종적인 법률적 해

12) 문화민주화를 둘러싼 제 세력의 각축에 대해서는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184~201면 참조.

13) 자세한 내역은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제6공화국과 출판 탄압』, 1990, 4~25면 참조. 1980~1993년 판금도서의 목록 및 그 解題는 한국출판문화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운동사:1970년대 말~1990년대 초』(2007.11), 163~243면 참조.

14) 천정환, 「1980년대 후반 한국 출판문화의 전환~‘세계화’로서의 민주화·자유화」, 『반교어문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216면.

15) 흥미로운 점은 공안기관의 사상검열에 전향간첩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7차례 대남침투 경력을 지닌 전향간첩 김용규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 분석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강인덕,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경인문화사, 2022, 411면). 전향 또는 귀순 간첩이 대공심리전과 사상검열의 주력으로 참여한 것은 분단체제의 역설적 산물로 1960년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본격화 되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석과 함께 이적표현물 검열·분석의 단일창구로 자리를 잡는다.¹⁶⁾

1980년대는 한국검열사에서 냉전검열의 내파, 즉 변용, 파국, 재편이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연대적 특징이 있다. 문화적 혁명과 냉전검열의 절정이 내접되어 격렬하게 맞부딪치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40년 동안 한국사상사·문화사를 지배했던 냉전검열의 진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냉전검열의 제도적 장치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유보, 은폐, 왜곡, 방기, 봉합되었던 냉전검열 체제의 구성적 외부까지 압축적으로 폭로·분출되는 동시에 그 해결과정의 지체를 거치며 탈냉전 시기 검열체제로의 변용·재편이 이루어지는 중층적 복잡성을 지닌다. 1980년대의 검열연구가 다른 연대에 비해 검열체제의 제도권 안팎을 두루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도서검열에 치중하여 1980년대 냉전검열의 진상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당대 책의 문화사에 대한 거시적인 일 조감이다.¹⁷⁾

II. 제5공화국 검열의 특징 및 장면

제5공화국의 탄생과 검열체제의 재편성은 5·16직후와 흡사하다. 군부쿠데타로

16) 「민주이념연구소 어떤 곳인가」, 『한겨레』, 1997.12.1. 재야단체, 학생운동권의 유인물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인문사회과학계의 학위논문 및 도서출판물까지 이념의 논란이 있는 문건이라면 모두 수집해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했다. 운영규정(대검훈령 제75호)을 보면 30인 이내의 연구위원회가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주관했으며 1997~1999년 총 648건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법원·검찰,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도서, 유인물) 목록』, 1999).

17) 정종현은 1980년대 <문화공보부 대외비 문서 문제성도서목록(국내)>(1983.11.30) 등 검열당국 및 피검열자(단체)가 생산한 각종 금서 목록을 종합하여 당대‘금서의 사회사’를 규명한 바 있다(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금서의 형태, 지정 시기, 대상, 기준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성과가 크나 그 이면에 작동했던 금서의 생산 조건과 논리에 대한 추궁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판(도서)검열의 체제와 금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찰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985년 이전/이후, 1987년 10월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른 판금 해제와 사법심사 의뢰, 제6공화국 등의 금서 양산 및 기조 변화를 관통하는 논리 그리고 서로 다른 금서 목록의 존재 등은 출판(도서)검열 체제 및 그 변동으로 접근할 때 보다 명료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령하에(1979.10.27~81.1.24) 초(헌)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를 설치하여 정당 해산과 입법권을 장악한 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각종 악법, 가령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집시법, 노동조합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신군부의 통치기반을 조성하여 제5공화국으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 5.16쿠데타에서 제3공화국 출범에 이르는 궤적과 동일했다. 4·19혁명/광주민중항쟁으로 분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민의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태생적 본질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차이를 들자면 5.16 직후가 개혁 성향의 청년군인들이 주도세력이었다면 1980년에는 관료테크노크라트가 권력 주체로 참여했다는 정도다. 예외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정권의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지경에서 사회·문화통제의 유력한 양식인 검열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게끔 만들었던 점도 공통적이다.

제5공화국 검열체제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유신체제, 특히 긴급조치시기의 검열 유제를 계승했다. 유신체제를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의 국가정보 독점과 조정·감독권이 10·26정변 후 비상계엄기에 보안사령부가 대체·관장하다가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관되는데(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2항), 이전 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법·제도적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권한이 '기획·조정'으로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다소 축소되나 검열과 관련한 조정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체신부의 우편검열 및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부의 대중전달매체(신문·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영화)의 활동 동향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에 관한 사항,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대공 민간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기획부가 최종 조정·통할했다(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개정, 1981.3.2, 대통령령 제10239호). 그 연속성은 긴급조치9호 해제와(1979.12.7)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조성된 사회·문화적 유신잔재 척결의 기회가 유보·박탈되는 것이자 영화검열의 부분적 민간 이양을 비롯한 영화시책의 전환(1979.3)과 같은 문화행정의 제도적 개혁 움직임의 철회를 수반했다. 아울러 유신체제의 기계적 계승에 그치지 않고 제5공화국 특유의 검열기제가 입안 시행된다. 특징적인 몇 장면을 통해서 제5공화국 검열의 조건과 논리를 살펴보자.

첫째 장면은 언론기본법의 제정이다(1980.12.31, 법률 제3347호). 신군부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직후 직권으로 1970년대 비판적 저널리즘을 선도하며 지식인사회에 영향력이 컸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씨울의 소리』, 『뿌리 깊은 나무』 등 172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취소(1980.7.31)와 연이어 부실출판사 617개사의 등록 취소를 단행한 뒤 언론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돌입한다.¹⁸⁾ 10·26정변 후 신군부의 언론 장악은 전폭적이고 또 치밀했다. 비상계엄하 보안사령부 주도로 추진된 언론에 대한 보도관제, 언론인 회유공작(일명 'K~공작계획'),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을 거쳐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對언론통제 연쇄조치를 통해서 모든 언론을 선제적으로 장악하기에 이른다.¹⁹⁾ 언론기본법은 기존의 언론규제 법안, 예컨대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을 통합하여 단일한 법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신문·통신·방송 외에 정기간행물(출판)까지 포함시킨 특징이 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적 책임 강조(제3조), 언론자유 보장과 헌법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허가나 검열의 불인정(제2조) 등 이전 관계법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독소조항, 특히 표현

18) 특이하게 조선일보사는 10·26정변 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종합지 『세대』의 판권을 인수해 대표적 친일잡지 『조광』을 잇는 월간종합지 『월간조선』을 창간한다(1980.4). 1970년 강제 폐간된 『사상계』 판권을 인수해 시사종합지 발간을 시도했으나 장준하의 반발로 불발되고 유신시대에는 월간지 신규 발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일보사의 오랜 숙원이던 월간종합지 창간이 이때 이루어진 것은 비판적 잡지의 출제간과 대조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다.

19) 그 전반기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군부의 언론통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10)에 정리되어 있다. 언론사 통폐합을 비롯한 신군부의 언론통제는 허문도가 주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상계엄하 보안사령부 정보처 2과(언론계) 및 이와 별도로 설치한 언론반(반장:이상재)을 통해서 모든 매체의 보도검열을 조종 감독했고 일련의 언론통제책이 입안·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허문도가 최종 성안한 '언론창달계획(안)'이 전두환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보안사가 포기각서의 문안을 작성하고 언론사주들에게서 포기각서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지 통폐합의 내용은 보안사의 시안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보안사(언론계)는 계엄 해제 후에도 1989년 2월까지 존속하면서 일선 언론기관을 상시 출입하며 언론기관 및 언론인의 동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한 민간인사찰을 자행했다. 1990년 10월 보안사 윤석양 이병의 양심고백으로 폭로된 민간인사찰계획(일명 '청명계획'~각계각층 주요인사 923명에 대한 체포카드를 작성하고 계엄시 이들을 검거·처벌한다는 계획)은 제6공화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정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실시된 예비검속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안사 민간인사찰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7) 참조.

물의 압수(제7조), 등록취소(제24조), 납본의무(제26조), 언론인의 형사책임(제53조) 등은 언론규제의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문화공보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적 장치를 통해서 언론을 합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신문지법 폐기 후 어느 권위주의 정권도 법적 통제에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세 차례 출판물법안을 제정 시도하다 실패했고, 박정희 정권 또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공포를 유예했으며, 엄혹한 유신체제에서도 출판의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한 출판사법안 개정(1975)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좌초된 바 있다.

언론기본법의 법효와 영향력은 특히 그 집행 과정에서 발휘됐다. 언론사(인)의 통제에 주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언론의 유착관계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보안사가 주축이 된 언론인 대량 해직 및 해직언론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계엄 해제 이후 관제된 기사의 보도금지 각서 요구 등으로 언론계를 순치시킨 데다가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주요 언론자본들의 독과점 체제가 확립되고 언론기본법상 언론기관의 다각경영(자매지 발행 및 신문사의 출판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언론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언론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²⁰⁾ 여기에 보도지침을 수단으로 한 신문검열의 상시화가 동반되면서 이를 더욱 강제했다.²¹⁾ 언론기본법에 의한 제도적 통제와 더불어 국가정보기구(안기부, 보안사 등)를 동원한 보도지침을 수단으로 한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일상화했다.²²⁾ 실제 이 시기에 언론필화가 거의 없었다.

20) 이에 대해서는 조상호,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나남출판, 1999, 276~292면 참조.

21) 보도지침을 통한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의 실상이 공개된 것은 월간 『말』(1986.10)을 통해서다. 특정사건의 보도 여부를 비롯해 매일 신문사에 전달되었던 보도지침은 정권의 억압성과 동시에 언론의 권력지향성을 드러내주는 증거다. 물론 보도지침과 같은 음성적 언론검열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5·16직후부터 공보부조사국 주관으로 신문분석(사실에서부터 만화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모든 기사와 논조까지 분석)과 보도제한사항 위배까지 적어도 1967년까지 치밀하게 이루어졌고(공보부조사국, 『국내정세·신문분석』) 계엄령하, 가령 10월 유신 선포와 동시에 발동된 비상계엄령하에서 하달된 보도금지사항(특히 퇴폐풍조에 관한 보도금지)이 공개된 바 있다(1972.10.25).

22) 문공부 홍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의 전반적 실태와 그 운용에 관해서는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언론·노동편(V)』, 국가정보원, 2007.10, 186~196면 참고.

있다면 1980년 제업사의 보도통제 속에서 검열 거부, 광주항쟁 사실 보도 등 언론 자유를 주창했던 기자협회 중심의 일부 언론인에 대한 구속 및 해직 정도다. 도서출판계에서 횡행하던 이적성 시비를 신문·방송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권력이 굳이 언론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언론의 순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정권의 하위파트너 또는 동맹관계로 재배치된 언론기관의 권력화는 曲筆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낸다. 속칭‘땡전뉴스’가 함축하듯 1980년대 신문·방송은 정권 홍보는 기본이고 특히 냉전금제들의 시효가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사회 변혁을 둘러싼 전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 사상전의 소용돌이에서 정부 대변의 프로 파간다 전위대로 노골적인 곡필을 쏟아낸다. 유신시대 곡필이 이른바‘유신교수’로 지칭되는 친정부적 지식인들에 의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의 곡필은 언론사가 전면 에 나선 곡필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월간 『말』(1985.6 창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을 비롯한 대항 언론매체 및 언론운동단체의 출현이 촉발·확산된 가운데 관제언론/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언론통제의 조건과 현황은 1980년대 검열체제 전반을 접근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자본이 정치권력 못지않게 검열의 핵심주체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이전에도 주로 비가시적인 형태로 피검열자의 위상에서 검열체제를 강화/약화시키는 요인이었으나 1980년대는 그 정도가 한층 증대되어 검열의 실효를 좌우하는 능동적 검열자의 위치로 전위된다. 3저(저달리, 저유가, 저금리) 현상으로 경제적 고도성장이 구가되는 시대상황에서 주요 언론자본은 광고시장의 확대와 권력이 조성해준 과점체제를 발판으로 거대기업으로 발전하면서 권력이 부과한 검열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영리 추구의 내면적 속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는다. 기형적인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로서의 입지 강화, 언론자본의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동시에 언론자본에 의한 간접검열의 강도가 최대치로 증가하게 된다. 이전의 간접검열이 매체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모면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 1980년대는 이보다는 국가권력의 언론검열과 일정하게 분화된 독자적 권한으로 언론자본의 (간접)검열이 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신체제가 동아투위·조선투위 등의 자유언론실천운동과 기자 대량해직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권언연합의 부정적 유산이 1980년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대량해직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정권의 시

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검열이 거둔 최고의 성과목록 중 하나였다.

다만 이러한 언론검열의 특징을 당대 검열체제 전반으로 일반하기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특히 대중문화 분야가 그렇다. 제5공화국에서도 대중문화가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의 중간 숙주로서 효용성이 컸고 정책프로파간다의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였기 때문에 텍스트검열을 위주로 한 강도 높은 검열을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을 포섭·장악하고자 했다. 퇴폐를 사회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을 총력안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했던 유신체제기의 정책적 기조가 연속된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통제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미국 측의 지적소유권(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보호 조치에 관한 압력이 한국산 컬러TV, 섬유류 수출 규제를 비롯한 통상 압력과 연계되어 가중되는 흐름이 1980년대 들어 한층 거세짐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화 행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개방화 및 자유화를 기조로 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검열정책의 이완을 추동했다.

영화의 경우 영화산업의 만성적 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한미영화협상 체결로 영화 시장이 개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 국산영화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진흥·육성의 방향으로 영화정책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영화수출협회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외화)검열 완화였다.²³⁾ 제작자유화(영화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제작과 輸入의 분리, 검열제에서 심의제로(국가기관의 사전검열제 폐지와 공륜으로의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영화법 개정(1984.12.31)과 영화시장 개방(외국영화사의 국내진출과 미국영화의 직접 배급)을 반영한 제6차 영화법 개정(1986.12.31)을 통해서 입안된 영화시책의 기본 방향은 한국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의 완화였다.²⁴⁾

같은 맥락에서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이 체결되면서 부과된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23) 그것은 미국영화의 한국 수출 확대를 위한 요구를 의미했다. 1985년 9월 미 영화수출협회는 1984년 한국이 도입한 외화 26편 중 미국영화는 14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통상법 301조를 적용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미국의 거센 영화시장 개방 압력은 곧바로 미국영화의 직접 배급을 비롯한 영화시장 개방으로 귀결된다(TV물, 비디오테이프물 포함).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지혜,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1985~2002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269~291면 참조.

과 저작권법의 개정(발효는 1987.7.1부터)은 영화, 도서출판, 연극, 가요(음반), 방송, 미술, 비디오 등 문화 전반의 상업적 관행을 크게 바꾸는 동시에 (국내외)저작물 비중이 큰 출판, 연극, 방송 분야의 제작을 위축·침체시키는 요인이 된다.²⁵⁾ 그 여파로 당시 국내출판물의 30% 내외를 차지했던 번역도서가 크게 줄면서 선진 지식의 유입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강경하게 요구한 20년 소급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저작권의 불소급원칙을 관철시켰으나(다만 미국저작물에 한해 무단으로 복제 출판된 리프린트만 10년을 소급해 보호),²⁶⁾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던 관련업계를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땅한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재의 개방, 심의의 완화가 불가피한 수단으로 선택된다. 국제문화 교류에 맞게 공룡의 심의 절차와 기준이 수정될 필요성도 작용했다. 영화법 및 저작권법 개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처사라는 여론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대두한 것 또한 큰 부담이었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상황적 압력에 의해 검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사상)검열은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서 도서 검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룡의 영화심의에서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규제가 일관되게 관철되었고 제6공화국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집요했다. 다만 분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外因으로 초래된 문화예술계 전반의 구조 변동은 자본이 검열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현저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룡의 존재와 심의 기능을 추인하고 정당화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소수가 독과점구조를 형성한 제작업자, 배급업자, 극장연합회 등 영화의 생산·유통을 지배했던 자본들이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투자)과 경제적 호황이 야기한 잉여자본이 대중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현상은 그 흐름을 한층 가속시키는 촉매

25) 「저작권법 ‘올가미’에 문화계 긴장」, 『매일경제신문』, 1987.7.1.

26) 1986년 저작권법 개정과 시행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50년사』, 2007, 113~133면 참조. 한미간 협상에 따른 특별규정으로 10년 소급이 적용된 미국저작물의 무단복제나 계약이 없는 음반, 비디오, 영화, 공연물 등은 법적 규제가 아닌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지도로 금지·보호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문공부는 지적소유권 우선협상국 선정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무단복제물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다.

가 된다.

둘째 장면은 ‘한수산 필화사건’이다(1981.5). 『중앙일보』에 연재 중이던 한수산의 장편 『욕망의 거리』의 일부 내용, 즉 “어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얼굴”(317회분, 1981.5.14)이 대통령을 빗댄 표현이고, “세상에 남자 놈치고 시원치 않은 게 몇 종류가 있지, 그 첫째가 제복을 입은 자들이니까”(324회분, 5.22)라는 대목이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군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작가와 연재신문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작가와 교분이 있는 언론출판종사자까지 총 6명이 보안사로 불법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던 사건이다. 특히 고문후유증으로 한수산은 정신적 방황을 하다 한국을 등졌고(도일) 엉뚱하게 배후로 몰린 시인 박정만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도 실직을 당하는 등 원시적 문화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의 파장이 컸다. 이 사건은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로소 폭로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로 전파되어 언론과 문화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의 무관심과 침묵, 자기검열과 끝없는 절망감을 조장하는데 성공한 문학(정치) 스캔들이었다.²⁷⁾

이 사건은 제도적 검열의 가시적 결과로서의 필화사건 일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권력이 주도한 희대의 문학필화라는 특징이 있다. 정치권력(자)의 치졸한 물리적 강압이 개입된 일종의 권력형 문학필화다. 비슷한 사례로 1952년 김광주 필화사건(또는 『자유세계』 필화)을 들 수 있는데, 월간 『자유세계』 창간호(1952.1)에 발표된 김광주의 단편 「나는 너를 싫어한다」의 일 부분(선전부장관 부인의 일탈 행위)이 당시 공보처장관(이철원)의 부인을 빗댄 것으로 곡해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가운데 작가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고 이를 처리(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권력/문학(단)의 쟁투가 문학스캔들로 비화된 경우와도 결이 좀 다르다. 이 필화사건은 당사자의 증언(호소)과 매체의 폭로 그리고 해당 매체의 폐간과 문단의 저항 및 내부 분열 등이 착종된 스캔들로 권위주의정권의 문화통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면²⁸⁾ 한수산 사건은 폭로보다도 국가권력,

27) 「침묵은 민주화의 장애물~7년 동안 묻혀 있던 한수산 씨 필화사건」(사설, 『한겨레』, 1988.10.22).

28) 이 스캔들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을 둘러싼 정치권력/사회·문화세력의 길항이 집약·분출된 사건이자 문단(학)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한편 문단

미디어, 문단의 강제화 된 담합에 의해 은폐된 채 긴 시간 동안 묵인됨으로써(때늦은 폭로)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건의 발생시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우발적 해프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족문화 계승을 명분으로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신군부의 정치적 이벤트 ‘국풍81’이 실시되던 와중임을 고려할 때 문단과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적실하다. 당시 보안사령부도 이 사건을 언론통폐합에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한 가운데 배후관계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취급하려 했으나 형사입건이 불가능한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²⁹⁾ 스캔들 폭로 후 이 필화는 문화계, 언론계에 정부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려 꾸민 조작극이라는 해석이 정설이 되었으나 이내 잊히고 만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던 유신정권의 통치전략을 더 악랄하게 발전시킨 정치적 기획의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캔들의 일반적 문법(모델)과 달리 무언의 압력으로 문화통제의 기조를 전시·부과한 제5공화국 검열체제 작동시스템의 고지였던 셈이다.

한수산 필화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전시 효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문단은 권력 순응적으로 포섭되었고 검열체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적어도 제도권에서는 그러했다. 문제는 검열체제를 위반·교란하는 대항적 문화실천이 (민중)운동의 형태로 동반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무크(지)다. 1980년대 들어 『실천문학』(1980.3)을 필두로 『우리세대(시대)의 문학』(1983), 『삶의 문학』(1983), 『문학의 시대』(1983), 『문학예술운동』, 『시와 경제』 등 문학관련 무크지가 대거 등장하면서 대항(안)적 문학의 가능성과 지평을 개척·확대시킨다. 점차 여성, 노동, 사회과학, 제3세계 관련 무크지 발간으로 확산되고 지방(역)의 무크운동도 활성화되면서 무크지(운동) 시대가 전개되기에 이른다(문

내 분열(화)이 본격화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특징적인 것은 공보처가 당시 사문화되다시피 한 (광무)신문지법을 근거로 해당 소설 전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과 영화화(각색:김소동, 감독:권영향, 수도극장, 1957.5.22)를 거쳐 스캔들의 파문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은 자유당의 부정적 유산으로 또 정치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변용되었다는데 있다. 이 필화사건의 성격과 파장에 대해서는 진선영, 「폭로소설과 백주의 테러-1952년 『자유세계』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참조.

29)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78면.

학종합 무크지는 대략 40여 종). 무크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선 문학 및 출판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반작용이다. 비판적 잡지들의 폐간과 더불어 출판사 등록규제로 인해 출판사 신규 등록이 완전히 봉쇄되었고(1985년부터는 지방에서의 등록도 불허, 명의변경도 차단), 언론기본법상(제5조2) 동일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이 정기간행물로 규정되어 언론규제의 표적이 되는 상황적 조건에서 이를 우회·돌파할 수 있는 대항미디어로서 무크가 선택된 것이다. 문학은 잡지들의 연이은 폐간으로 지면 확보라는 동기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사상계』 강제폐간을 전후하여 함석헌이 제시한 게릴라매체의 필요와 긴급조치시기 언론인의 대량 해직과 그들의 출판계로의 진출 등 유신시대에 모색된 새로운 출판경향의 잠재성이 제5공화국의 출판탄압과 결합되어 무크나 동인지 같은 부정기간행물이 출판의 한 획기적 흐름으로 대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공화국 검열체제가 무크라는 비합법적 대항미디어의 출현을 자극하는 동시에 전문지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관광, 여행, 스포츠, 경제 등 본격적인 전문잡지시대 및 선정주의에 경사된 대중문화가 축성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무크지의 대거 출현을 제5공화국 출판탄압이라는 제도적 부산물로만 볼 수 없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사회운동이 광범위한 대중적 기초를 갖는 민주·민중운동으로 성장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한 대안적 이념과 운동의 필요성이 무크지 탄생을 견인한 주된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크지의 선구였던 『실천문학』 창간호에 명시한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임을 선언한 것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같은 지향과 기조는 이후의 모든 무크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장성, 기동성, 게릴라성이란 무크지 고유의 특성이 대안적 문화운동에 가장 적합한 매체였으며, 실제 이 같은 장점에 착안한 무크지 기획이 1979년 유신시대 민족·민중문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 의해 추진된 바 있고(1979년 10월에 발간예정이었으나 10·26정변으로 유예) 그것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이 강제 폐간되기 이전 1980년 3월 『실천문학』으로 결실된 것이기도 했다. 무크지 운동을 진작시킨 또 다른 동력은 사회변혁운동의 고양에 따른 대안적 이념의 분화와 경합이었다. 무크지의 중심을 이룬 문학의 경우 민주화와 더불어 성장한 기층 민중들의 문학적

표현 욕망이 다양한 문학무크지를 출현시킨 주된 요인이었으며 기존의 규범적 제도 문학, 지식인중심의 엘리트주의문학 등 주류문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운동으로서 기존의 문학적 질서를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의 주체적 문학참여와 함께 민중·민족문학운동을 추동하는 중요 거점이 되었다.³⁰⁾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무크지의 전성은 당대 검열체제에 대한 대항미디어로서의 제도적 위상과 함께 시대적 요구와 민중주체의 실천적 의지가 결합된 대안적 문화실천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이 검열체제를 정면으로 교란하며 민중·민족적 문화운동의 매체 거점으로 기능했던 (문학)무크지를 내버려둘 리가 없었다. 『실천문학』은 매호 발간 즉시 시판 금지시켰으며 급기야는 『실천문학』을 언론기본법상 발행목적 위반으로 등록 취소(1985.8.23) 및 5회에 걸쳐 『실천문학』을 발행해온 출판사 이삭을 등록 취소시켰고(1985.8.27), 무크형태로 발간된 『창작과 비평』이 미등록 상태로 부정기간행물에 통권번호를 매겼다는 이유로 창작과비평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키는(1985.12.9) 등 연이은 강경책을 구사한 바 있다. 하지만 무크와 민중적 지향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고양된 민중민족문학 운동을 억제·봉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한라산」 필화사건(1987)이 이를 잘 보여준다.³¹⁾ 이 필화는 체제 유지의 힘과 한국사회 변혁의 민중적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파열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해준다. 국가권력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란 뒤늦게 무크지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뿐이었다. 민주화 국면에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11.28. 제정)은 정기간행물의 범위를 연 1회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부정기간행물의 출판마저 봉쇄하려는 시도였다.

30) 이에 대해서는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참조.

31) 사회과학전문 무크지 『녹두서평1』(1987.3)에 발표된 장편서사시 「한라산」의 작가 이산하가 국가보안법 위반, 즉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파악하고 무장폭동을 민족해방을 위한 도민항쟁으로 미화하며, 인공기를 찬양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했다”(검찰 공소장)는 혐의로 구속,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문학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1980년대 첫 필화로 냉전분단 금제를 둘러싼 국가권력/민중세력 간 막바지 사상전이였다. 사건의 여파는 발행인(김영호)과 편집장(신형식)의 구속 및 실형 선고, 『녹두서평1』은 사법상 이적도서로(1987.10.19.), 좌익출판물로 규정되어(1989.11.29. 검찰 발표) 판금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김지하 외, 『한국문학필화작품집』, 황토, 1989, 119~121면 참조.

셋째 장면은 일련의 자율화·개방화 조치다.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문화 창달 등 4대 국정지표를 표방하고 출범한 제5공화국은 전과기록 말소(1980.7), 신원기록 일제 정리와 연좌제 전면 철폐(1980.8), 민원서류 간소화, 수입자유화 확대(1981.5), 해외여행 자유화(1983.1.1, 전면 자유화는 1989년), 신원조회 간소화, 금융자율화 등 행정규제 개혁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야간통금 해제(1982.1.5), 중고등학생 두발 및 교복자율화(1983.3) 등 일련의 자율화·개방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했다. 이반된 민심을 수습해 정권안정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1980년대 국제화(세계화) 추세 및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른 국내외의 개방화 요구에 부응한 조치였다. 제5공화국 1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제5공화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통해서 그 신뢰를 확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²⁾ 고전적인 3S정책(스크린, 스포츠, 섹스)도 정권안정에 한 몫 했다. 제5공화국의 3S정책은 어느 시기보다도 대중조작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1980년대의 대중문화는 오히려 독재정권의 3S정책에 의해 활황을 맞는 특수성이 없지 않다. 물론 그 배면에는 대중문화의 생산~유통에 대한 장악과 검열을 통해서 관리·조율하는 전략이 관통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愚衆化 효과는 매우 컸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의 흥행은 스포츠가 법적으로 금지된 각종 환각 매개물의 대용품으로서 수용의 폭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저항집단까지 포획하기에 이른다.³³⁾ 대중문화로서 스포츠의 대중조작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조치는 문화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학문과 예술에 대한 각종 규제 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고, 법 개정을 통해서 검열의 수위와 진폭도 이완되는 방향

32) 경향신문(정경문화연구소)의 <‘제5공화국 1년’ 전국 국민의식 조사>(1982.1.21~23, 방문면접)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민주주의 토착화(74.5%), 복지사회 건설(83.6%), 정의사회 구현(92.8%), 교육혁신·문화창달(74.7%) 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통금해제(77.5%), 해외여행(65.9%), 연좌제 폐지(71.3%) 등 개방·자율화 조치에 대해 압도적인 공감을 나타낸다. 올림픽 유치는 환영이 70%, 부정이 30%였다. 두발·교복자율화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한 것이 특징적이다(찬성 48.4%/반대 47.2%).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사회 건설의 실현가능성을 믿는 가운데 내일을 낙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제5공화국이 비교적 빠른 기간에 국민 동의를 획득하면서 정권 안정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분석은 『경향신문』, 1982.3.2. 참조.

33) 이성욱, 『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175면.

으로 조정된다. 정권유지의 자신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가장 극적인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던 이념도서의 출판을 ‘과감히’ 공식적으로 허용한 정책이다. 그로 인해 (사회과학)서적의 르네상스가 열리는 시공간이 도래한다. 사회주의이론의 허구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학술적 차원에서 구명하여 차원 높은 이론적 반공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문화공보부가 1982년 2월 이시아 별린(I. Berlin)의 마르크스평전인 『칼 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신복룡 역, 평민사, 1982)에 대해 납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다양한 이념서적의 출간·시판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학원 소요의 원인이 좌경의식에 있다는 문교당국의 다소 안이한 문제의식 속에 1981년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정해지고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현대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역사~체계의 모든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제언이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과 맞물려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³⁴⁾ 그 파장은 엄청났다. 『칼 맑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초판 5천 권이 이틀 만에 매진되었고 발간 40일 만에 5만2천 부가 팔려나갔다.³⁵⁾ 장기간 정부 독단적인 금지가 불러온 반동적 문화현상이었다. 현행 법(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연이어 발간된 수십 종의 이념서도 빠르고 광범하게 전파되어 독서대중을 파고들었다. 당시 저널리즘 용어로 ‘혁명(서)상업주의’가 발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로 시판된 이념서는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민음사), 라이트 밀즈의 『마르크스주의자들』(한길사), L·사피로(『소련공산당사』, 『공산주의 독재의 기원』), R·C 터커(『스탈린이즘』, 『칼 마르크스의 철학과 신화』), B·무어(『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소비에트의 정책-힘의 딜레마』) 등에서 확인 되듯이 대체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래 전에 출판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도서였고 저자 또한 비판적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오늘의 중국대륙:정치·사회·경제·사상의 변동과 지향』(유세희, 한길사,

34) 「대학생의 사상교육 문제」(사설), 『조선일보』, 1981.1.15. 이 허용조치 전에 문화공보부는 T·스코치폴의 『국가와 사회혁명: 혁명의 비교연구』(까치)의 납본필증을 1981년 11월에 발급해준 바 있다.

35) 「꾸준한 사상서적 인기」, 『동아일보』, 1982.4.1. 40일간 5만2천 부의 판매부수는 당시까지 사회과학서적 판매역사상 최단 시일 최대 판매부수 기록이었다. 독자들의 假需要까지 겹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1984))과 같은 중국관련 및 국내저술 도서도 일부 포함되었다. 유화조치가 철회되는 1985년 초까지 출판된 도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실존주의를 비롯한 뉴레프트 사상, 종속이론과 제3세계론,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서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념서라기보다는 전문적인 학술서적(대학교재용)에 가까운 도서들이었다. 이 국면을 틈타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루카치, 그람시, 마오쩌둥 등의 원전텍스트가 불법적으로 번역 출판되는(지하출판) 흐름이 나타나나 모두 불법도서 또는 이적도서로 규정된다.

이러한 이념서적 출판의 활성화가 끼친 영향은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학, 지식인사회 나아가 일반 독서대중들에게까지 좌경사상을 전파·확산하는 통로로 기능하면서 당대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자양분이 된다. 이 이념서 열풍은 (사회주의)사상서의 금제와 권위주의 통치/민주화 운동의 대립이라는 시대·문화적 콘텍스트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반공주의적 기조 위에서 쓰인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서(또는 때늦게 도착한 증역된 마르크스주의)에 기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사회사상적 욕구를 채웠던 기운의 안팎을 말해준다. 이들 서적이 1980년대 냉전의 벽을 깨는 연모로 사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거시적으로 볼 때 대안적 이념의 편협성과 변혁운동의 엘리트주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기도 했다.³⁶⁾ 사회과학서가 가장 각광을 받는 출판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사상과 지식의 편향성을 조장하는 ‘좌파상업주의’가 범람했던 현상은 이념도서 해방의 어두운 기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념서 해방의 자유화 조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5년 2·12총선을 계기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재편 및 개헌정국의 조성으로 체제 위기가 닥치자 정권은 이념도서에 대한 탄압으로 출판정책을 역전시키고 극단적인 행정단속으로 선회한다.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이념서의 상당수가 문제도서로 (재)지정되면서 금서가 폭증하는 시기가 전개된다.³⁷⁾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윤리강령 위반

36) 당대 진보학계가 마르크스이론을 주로 소련의 교과서를 통해 수입했고, 노동자의 해방과 인간해방에 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관한 논의에 치중된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영향으로 변혁운동이 엘리트주의에 사로 잡혔다는 비판은 여러 경로로 도입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변혁운동의 상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 김수행, 「‘들어라 양키’로 처음 만난 마르크스」, 『한겨레』, 1993.2.22.

37) 그 이전에도 조짐이 보였다. 가령 『오늘의 중국대륙』은 납본필증을 교부 받아 시판되었으나 재판금지의 문제도서로 지정된 바 있다(1984.11.30.). G·노바크의 『실존과 혁명』(한울, 1983) 등

으로 제재를 받는 도서의 양이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미풍양속 저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사실 왜곡, 사회 악영향의 제재 이유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의 반영이다. 바야흐로 사상전의 최후적 대결이 펼쳐지는 국면이 도래하기에 이른다.

이상 세 가지 장면은 이전 냉전검열의 축적된 체제를 계승·변형시킨 것으로 제5공화국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기조는 제5공화국 전체를 관통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검열체제도 정세 변동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었다. 검열의 강화/유연화가 교체·반복되면서 검열의 정당성과 사회문화적 통제 효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980년대 검열체제를 동질적인 한 연대로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1987년 (냉전)검열체제가 총체적 파국을 맞고 또 다른 검열체제로의 재편성이 격렬한 소용돌이를 거치며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도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도서(출판)검열의 실상을 통해서 이 과정을 조감해보자.

III. 1980년대 도서검열과 책의 운명

1980년대, 좀 더 확장하면 제5공화국과 '87년체제'의 제6공화국까지 도서/검열 체제 길항이 횡단하면서 겪어야 했던 책의 운명은 냉전검열사의 차원뿐만 아니라 냉전문화사·지성사(지식사)·출판사 및 독서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주제다. 금서의 사회문화사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다각도의 접근과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주제이나 그 윤곽 정도는 1980년대 검열연구의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소련에서 사회과학연구원이 대중을 위한 역사서로 펴낸 공식 당사인 『소련공산당사』의 번역·출판/검열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보자.

이 책의 일부가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전3권, 황인평 역음, 거름, 1985.11)이란 제목으로 처음 번역·출판된다. 이념도서 시판 허용의 국면에서 출판이 시도된 것으로(공식적으로 납본필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3권 모두 출간 즉시 시판(종용)금

이 시기에 시판 허가된 이념서의 일부가 판금도서로 재지정되었다가 1987년 다시 해제되는 과정을 밝는다.

지 도서로 지정되었고, 출판사 대표(박윤배)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징역1년 자격정지 1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운동을 찬양하고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인본사상을 미화시켜 조명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검찰 공소장). 번역 의뢰자와 출판부 직원도 같은 혐의로 수배되었다. 아울러 1987년 『러시아혁명사』(편집부 엮음)로 재판되는데 이 또한 시판금지 도서로 지정되는 동시에 제호 변경을 이유로 편집부장(강경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실형을 선고받는다. 사법상 이적도서로 규정된(1988~89년 두 차례) 가운데 금서(불법도서)가 되었고 두 책 모두 1987년 금서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사법의외 대상도서가 된다. 민주화 국면에서도 대검찰청이 발표한 ‘좌익출판물’(103종)에도 포함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출판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이 책을 소지하거나 탐독했다는 이유로 또 판매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만들어냈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후 舊공산권국가 간행물의 출판이 가능해지자 『소련공산당사(전6권)』(B.N 포노말료프 외 엮음, 편집부 역, 1992~93)가 기획출판의 형태로 전면 재번역되어 완간됨으로써 7년에 걸친 번역·출판이 마무리된다. 하야카와(早川 徹)가 번역한 일본어판 『소비에트 연방공산당사』(요미우리신문사, 1971)를 참조한 일본어중역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러시아와의 공식 국교수립(1990.9), 1992년 대선에서의 색깔론 여파 속에 1~3권은 20만 부가 팔렸다.³⁸⁾ 원서가(1969년 제3판, 일명 브레즈네프판) 출간된 지 20년 넘어 한국독자들에게 뒤늦게 읽힌 것이다.³⁹⁾ 그 1~3권 또한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확정되었다(1994년 춘천지방법원).

『소련공산당사』 번역출판의 7년 과정은 (탈)냉전기 도서의 존재방식을 잘 드러내 준다. 의도적 납본 거부, 번역자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거나(편집부로 제시) 번역서의 제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검열우회 전략, 문제도서/이적도서/불법도서의 마구잡이 규정, 사상서의 중역(대체로 일본어중역) 형태, 독자로까지 미쳤던 사상검열의

38) 「‘소련공산당사’ 7년 만에 완간」, 『한겨레』, 1993.1.13.

39) 『소련공산당사』가 1969년 재출간(제3수정판)되었을 때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논평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기존 판본과 달리 스탈린에 대한 비판 삭제, 흐루시초프의 실정, 모택동 찬양 부분 삭제 등 곡필에 초점에 맞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곡필에 비친 소련의 내막: ‘소련공산당사’의 새로운 내용」, 『중앙일보』, 1969.11.1). 또는 격하되었던 스탈린 부활 움직임과 술제니친 등의 자유주의 작가에 대한 탄압을 연관시켜 경계하는 논조도 있었다(「부활하는 스탈린 망령」, 『동아일보』, 1969.12.27).

대상과 범위, 1987년 이후 도서검열의 재편성과 그 실상 등 이 시기 도서검열로 빚어진 다양한 흔적이 집약되어 있다. 나아가 책의 운명이 곧 지식의 운명이자 사람의 운명으로 연쇄되는 문제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출판검열체제의 법적 기제는 크게 네 가지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언론기본법(특히 등록(취소) 및 납본의무 조항), 경범죄처벌법(제1조44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이다. 저작권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등도 도서의 사회적 존재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나 검열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미약했다. 1960~70년대 외서 수입 및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은 1980년대 이념도서의 점진적 해제 추세와 대항 출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서 유입을 통제하는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했다. 도서 통제에서 앞의 네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시점 및 대상에 따라 특정 법률이 집요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가령 1985~87년 사상전이 고조되었을 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적도서 양산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출판사(물)의 압수수색이 횡행했다. 이들 법률에는 검열을 정당화하거나 (사전)허가, 검열(사전/사후 검열), 심의(출판물의 경우), 판금, 이적도서 등 당대 도서검열의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명시한 조항이 전혀 없다. 있다면 등록(취소), 납본, 심의(정간물의 경우), 압수(법관의 영장 발부 전제)에 관한 규정 정도다. 그럼에도 텍스트생산자(저자, 출판사 및 인쇄소, 매체), 텍스트(원고 및 교정지 포함), 유통업자(서적상), 수용자(독자)등 도서의 생산~수용 전반을 어떻게 통할할 수 있었는가가 1980년대 도서검열의 특징이자 비밀이다. 법적 규제의 공백지대는 행정지도란 명목으로 남용된 행정단속이 메웠고, 그에 따라 사법부가 검열체제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이 의도한 만큼의 도서 통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당대 도서 검열을 일관하는 주된 통제 방식은 출판사 등록제도와 납본제도다. 언론기본법상 정기간행물 등록제도(제20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출판사 등록제도는 단순한 신고사항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됨으로써 신규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장치로 이용된다. 게다가 등록취소 조항까지 뒀으로써 허가제의 권능을 강화시킨다. 이는 유신시대의 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⁴⁰⁾ 문제는 허가제로서의 운용이 극심했다는 점이다. 1980년 7월~1987년 6·29선언 기간

서울에서 신규 등록이 허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지방도시
에 등록하는 편법이 성행했으나 이조차 1985년 12월부터 규제했다. 또 다른 방편
으로 기존 출판사의 등록증을 인수하여 명의 변경을 하는 방식이 구사되었는데 이
도 1984년 12월부터 봉쇄시켰다.⁴¹⁾ 검열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생산(자)의
물적 조건을 사전 억제하는 방법이 그나마 도서 통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였
을 것이다. 따라서 1987년 이후에도 등록제도는 폐기하지 않고 더 강화시킨다. 언
론기본법이 폐지된(1987.11) 직후 그 대체법안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1987.11.28)은 신고제로의 변경 요구를 묵살한 채 등록제를 고수한
가운데 문화공보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기간행물의 정간이나 폐간을 명할 수 있도
록 규정했다(제12조2항). 『노동해방문학』에 대한 3개월 발행정지(1989.12.29)
이 규정을 적용한 제6공화국의 첫 출판활동 규제였다.

납본제도는 등록제도와 함께 제5공화국 출판검열을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출판
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에 의해 출판사는 간행

40)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1961.12.31) 등록취소 조항이 없었다가
유신선포 직후 개정 과정에서(1972.12.26) 등록취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제5조2), 특히 퇴폐를
국가안보적 요소로 취급했던 시책에 따라 음란·저속간행물 출판사의 등록취소가 포함된 바 있다.
곧바로 이루어진 개정에서는(1973.8.23) 등록신청 조항 중 출판사 또는 인쇄소 대표자의 신원진
술서를 필수서류로 포함시켜 신규 등록을 더욱 제어하는 장치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독소조
항이 포함된 것이 제5공화국에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41) 출판사 거름(박윤배)의 사례를 보면 1979년 6월 인문사회과학 전문출판사‘거름’을 설립했으나
서울에서 신규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인천에서‘거름출판사’로 등록하고 서울에서 출판행위를 하다
등록 취소되었으며(소재지 불명이 이유), 수원시에‘도서출판 거름’이란 상호로 등록해 출판활동을
지속하다 서울대민주열사추모위원회 편 『산 자에 따르라』(1984.11.22.) 출간 뒤 구류 10일의
형 선고와 출판서적 및 지형의 압수, 압수품에 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해당 서적의
납본이 거부된 뒤 곧바로 출판사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후 『소련공산당사』번역출판(기획출판
거름)과 관련한 수난은 앞서 언급했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탄압백서』, 1987.6, 29면
참조. 거름의 사례는 1980년대 이념서 출간을 주로 했던 출판사들의 일반적인 경우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출판사명이 자주 변경된 것도 등록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다. 당대 도서의 서지사항을
밝힐 때 이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출판환경으로 인해‘숨은
저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당대 금서들 가운데 저자가 편집부로 되어 있거나
이진경, 조진경, 정인(황인평) 등 가명(필명)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1950년대부터 점차 사라
진 가명 사용이 1980년대에 다시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은 책의 해방이 억제된 어두운 시대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출판물의 2부를 소정절차에 따라 판매 또는 반포 15일 전까지 문화공보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로 출판사의 법적 의무는 끝난다. 그런데 당국은 납본제도를 애초의 법 취지(국가자료의 총괄적 집성 및 통계)와 달리 도서를 판매 금지시킬 수 있는 절차로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납본필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시판(재판) 금지를 종용함으로써 도서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시행했다. 납본과 판매 사이의 15일은 사전검열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 과정에서 납본을 미끼로 도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거나 출판책임자의 자필각서를 요구하는 등 검열당국(문화공보부)의 입장이 지배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었다. 납본이 검열결과에 대한 판매허가증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납본제도의 악용은 일제의 출판경찰 제도의 부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20~30년대 일본제국 및 식민지에서 사상운동 취체를 목적으로 납본제도를 활용해 반체제 도서의 유통을 통제하는 사전검열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의 재판이다.⁴³⁾ 발매·반포 금지 위주의 행정처분 방식도 같았다. 이런 맥락에서 금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배태된 것이다.

제5공화국의 금서는 납본필증을 교부받지 않아 자동적으로 판매금지가 된 천여종으로 추산된다.⁴⁴⁾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의 『출판탄압백서』에는 당국이 서점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참고했던 <문제도서 목록(국내)> 671종과 1985년 10월까지 총 107,330종을 납본 받아 1,428종의 간행물에 대해 납본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문화공보부의 국회 보고 내용 등을 참작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근 천여 종으로 추정했다. 유신시대의 금서 규모에 비해 폭증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온)유인물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배가될 것이다. 다만 금서의 양산을 검열당국의 무자비한 출판탄압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산물인 것은 명백하지만 여기에는 출판주체들의 의도된 반란, 다시 말해 도서검열체제에 대한 자발적·능동적 위반이라는 지향이 개재되어 있다.⁴⁵⁾ 특히 이념서 간행을 위주로 한 출판

42) 납본 규정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때에는 규정만 명시했다가 동법 시행령(1962.3.29)에 重版까지 포함해 7일 전까지로 명시한(제5조) 규정이 이어지다가 제5공화국 때 15일로 늘어난 것이다.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출판사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다.

43) 「사상운동취체코자 출판경찰법 개정」, 『조선일보』, 1933.8.19.; 조상호, 앞의 책, 313면.

44) 「금서와 출판사 등록」, 『동아일보』, 1987.7.7.

45) 문공부가 1981년 12월 일부 출판사가 고의적으로 납본을 기피한데 대해 법정 납본의무 준수를

사들은 재정적 손실(과태료 부과)을 감수하며 납본 즉시 시판을 하는 경우, 납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시판중지 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원전(마르크스·레닌, 북한 원전) 출판은 모두 비합법적인 출판으로 유통되었다.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도서, 유인물) 목록>을 보면 불온유인물과 함께 단행본 중 이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금서를 복권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관료적 금서정책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이러한 금서의 양면성은 당대 책의 수용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조됨이 된다. 아울러 이는 등록제 및 납본제도를 근간으로 한 도서검열체제의 한계가 이미 제도 시행 자체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운용상의 문제도 컸다. 출판의 황금시대, 즉 제5공화국 시기 매년 약 1,70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일간, 통신, 주간, 월간, 기타)과 연간 3만3천여 종수, 총 발행부수 1억 부 이상을 기록하는 출판의 양적 팽창 추세 속에서⁴⁶⁾ 문화공보부가 납본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심의를 실효 있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소 하루에 백 권 꼴이다. 사상검열에 치중했다고 해도 과부하가 걸리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불온간행물심의자문기구 설치를 모색하나 쏟아져 나오는 도서를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⁴⁷⁾ 그 같은 문제점은 판금조치의 모순된 기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원서의 수입은 허가되나 번역판은 판금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묶은 단행본이 판금되는 경우, 절판된 것을 다시 재출간하는 경우나 초판에서 납본필증을 받은 것이 재판에서 뒤늦게 판금되는 경우, 특정 필자의 경우 무조건 판매 금지시키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⁴⁸⁾ 도서검열의 능률성을 위해서라도 자율적

촉구한 발표로 미루어 볼 때(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82』, 46면) 출판주체의 능동적 반검열이 제5공화국 초기 출판검열의 공세적 강화와 대응해 성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이중한 외,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193~194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83년에 도서발행부수가 해방 후 처음으로 1억 부를 돌파했다고 공표했다. 1980년 말 발행부수/출판사수가 2만 종/1,980개에서 1989년 말에는 4만여 종/4,779개사로 각각 팽창하는데, 출판량 4만 종은 전 세계 1년 출판량의 5%에 해당하는 숫자로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출판대국에 진입했다(『이념도서 해금 속 질·양 성장』, 『경향신문』, 1989.12.15).

47) 『이념도서와 자율심의 기능』(사설), 『경향신문』, 1985.5.11.

심의(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열당국에서 더 강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위 두 제도가 사전억제책이라면 사후검열도 강력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1985년 5월을 기점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세 변동, 즉 2·12총선의 여소야대 결과와 광범위한 반독재민중연합의 민주화운동이 계급해방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고조된 체제 위기로 인해 출판(검열)정책의 기조가 강경책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3년여의 유화국면이 철회되면서 출판검열은 사법처분을 위주로 한 사후검열의 강화로 전환된다. 그것은 문공부당국자의 발언, 즉 “납본했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1985.5.5)로 확인된다. 납본은 절차법상의 요건에 불과하고 내용상의 위법행위는 법적 판단(사법권)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내용이다. 납본필증을 받은 책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인다. 사후검열은 국가보안법과 경범죄처벌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1985년 5월1일 문공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념서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조치가 신호탄이었다. 수색 영장 없이 대학가서점 및 출판사·인쇄소를 대상으로 3일 동안 4500여 부의 서적과 유인물을 압수했다. 이는 사전억제 방법으로는 차단이 불가능했던 (불온)유인물이 검열망 안으로 포섭되는 계기가 되었다. 압수수색의 법적 미비가 논란될 수밖에 없었는데 검열당국은 경범죄처벌법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동법 제1조44(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궁색하게 적용한 것이다.⁴⁹⁾ 경범죄처벌법 위반, 그것도 당국이 제시한 압수기준으로 볼 때 반국가적·반사회적 불온도서를 사법당국이 동법에 준해 심판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된다.⁵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후검열도 이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텍스트에 대한

48) 윤재걸, 「금서」, 『신동아』, 1985.6, 411~412면.

49) 1954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73년 개정(경미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장발, 투명의상의 착용 및 신체의 과다노출 행위 등 7가지 추가)을 거쳐 유신시대 사회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출판검열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동법 제4조(납용금지)에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당국이 밝힌 압수 대상 불온출판물은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편승, 폭력투쟁을 선동한 것, 좌경사상을 담은 외국출판물을 불법반입 복사한 것, 현실을 왜곡 비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이다.

사상검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텍스트생산자(출판사 및 출판인)로 연계된 국가보안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출판사 등록취소와 출판인에 대한 구속이 빈번해진다. 이전보다 필화사건과 금서, 특히 사법적 이적도서가 증가했던 이유다. 불온성에 대한 칼날은 텍스트에 대한 사전검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불온간행물 심의 전담기구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추세는 신공안정국이 대두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율화 시기가 종식된 뒤 1985~87년 한국사회는 해방 후 가장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사상전의 시대를 맞는다. 좌경·용공프레임을 둘러싼 사상공세가 권력/민주세력, 민주세력 내부 간 중횡으로 전개되는데, 권력은 좌경 용공세력에 대한 근원적인 색출 및 좌경사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 반공교육을 쇄신한 범국민사상 재정립 운동을 추진하며 사상공세를 파상적으로 몰아붙였고,⁵¹⁾ 민주화 운동 세력도 반독재민주화를 넘어선 사회변혁 운동의 이념 분화와 노선의 차이를 동반한 가운데 지배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프로파간다에 주력한다. 이러한 양극적 사상전에 보수언론이 일제히 가세해 좌경 척결·분쇄를 구호로 한 사상정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총력전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특히 극단적 냉전분단 이념에 경사된 언론의 사상전은 정권의 빈약한 사상대책을 보충하면서 전 사회적 내부냉전을 극대화시키는 주범이었다.⁵²⁾ 이 사상전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된 것이 출판 또는 책(이념서)인데, 좌경·용공의 온상이자 의식화의 무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서(출판)가 검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좌익출판물의 유통 거점이던 (대학가)서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 된다.⁵³⁾

51) 「용공 분쇄 종합대책 강구」, 『경향신문』, 1986.10.18.

52) 특히 1987년 전후로 걸쳐 경향신문이 시도한 사상정화캠페인, 예컨대 〈좌경을 직시하자〉시리즈(1986.10.16~29), 〈續 좌경을 직시하자〉시리즈(1987.9.28~10.2)는 권력에 순치된 언론이 지배블록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53) 서점을 매개로 한 불온서적의 반입·배포가 학원(대학)가의 좌경의식 조장과 반정부 시위의 과격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한 공안당국, 특히 보안사는 서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제5공화국 초기부터 집중한 바 있다. 일례로 창작과비평사, 한길사, 광민사, 청사, 한국신학연구소, 분도출판 등의 특수보급(총판)서점이던 민중문화사(1978.10 개업, 대표 정진영)를 국내 판금서적 등 각종 불온서적을 구입해 시내 각 대학생들에게 비밀리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대표를 1981년 10월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과 무리하게 연루시켜 검거했다.

그런데 이 시기 도서검열체제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공안기관이 도서 검열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용공·좌경을 표적으로 한 사상검열의 실질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문공부, 검·경) 합동으로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실무대책반이 구성되어(1985.5) 판매망의 차단, 압수수색의 기준 및 대상 조정과 동시에 좌익사상을 비판한 도서의 역보급(추천도서) 등을 조직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금서/추천도서가 대칭적으로 증가하는 형국이었다.⁵⁴⁾ 치안본부는 별도의 불온간행물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압수수색과 출판인 연행을 주도했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적극 활용된다. 1986년에 236종(이념서적 153종), 1987년 105종(이념서적 78종) 등을 심의해 제재 조치를 내리는데, 이전에 비해 이념서에 대한 심의(검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념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문공부에 제재를 건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검열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반을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기관이 이끌었다. 출판(도서) 전담기관인 문공부의 위상이 약화 내지 미약해진 것이다. 유신체제 하 중앙정보부를 정점으로 한 사상검열 체제가 재가동된 것이다.

그것은 공안정국의 와중에서 검찰이 이념서적 78종을 해금하는 것에서 확인된다(1985.6.8). 즉 검찰은 문공부의 기존 <판금도서목록>과 경찰의 <불온유인물 목록>을 합쳐 사법처리 단계에 앞서 걸러내는 가운데 <불온책자목록>(162종)을 다시 정비하고 그 외 순수학문적 저술(강재언의 『일제하 40년사』 등), 오래 전에 출판되어 금지의 효력이 상실된 문학작품(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양성우의 『겨울공화국』 등), 월북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비판서(김윤식의 『한국근대소설비판』 등)를 판금 해제시킨다.⁵⁵⁾ 애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도 이때 해금되었다. 예상치 못한 이 해금조치는 검열당국 나름의 정교한 접근을 보여준다. 불온성(좌경·용공)

54) 양서 보급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시행된 문공부의 추천도서제는(우량도서 선정에서 1975년부터 문공부추천도서 선정으로 명칭 변경) 초기에 번역물·전집물 위주로 20종 안팎이 선정되다 1979년부터 어린이만화를 포함해 창작물·저작물 중심의 40종 이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거친다. 제5공화국 이후로는 연 평균 150여 종으로 대폭 증가한다. 특히 1982년부터 사회과학도서가 사상교육을 오도한다는 평가 속에 이 분야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사회과학 도서를 확대해 선정하는 양면성을 나타낸다. 금서/추천도서의 구조적 상관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했을 때 금서의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찰할 예정이다.

55) 「이념서적 78종 해금」, 『동아일보』, 1985.6.8. 7면에 해금된 서적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을 과격혁명이론과 급진좌경이론 서적으로 축소·집약시키는데, 이는 민주화운동과 계급운동(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분리주의를 통해서 그 상호 연계적 발전을 차단하고 사회변혁운동을 반체제성으로 규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분쇄하겠다는 포석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대세적 흐름을 인정한 교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문공부의 기존 판금목록은 그다지 소용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열기관들의 좌경·용공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에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검찰, 경찰, 문공부, 내무부의 판단기준을 보면 문공부의 기준이 노동자·농민, 문학예술, 여성, 북한, 역사, 사상 등 1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광범하고 세부적이다.⁵⁶⁾ 문학예술의 경우 사회주의리얼리즘에 관한 책자나 사적 유인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선정기준이 막연하고 애매하다. 어쩌면 광의의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문공부 지정 판금도서가 양산된 면이 크다. 조금씩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된 각 검열당국의 비공개 판금도서 목록은 1985년 이후 도서검열의 일람표 구실을 했다.

그리고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높여야 하는 동기(부담)도 작용했다. 도서검열이 사법적 처분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법적 공방에서 공소 유지와 함께 검열의 정당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필요는 법리적 차원의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한 불온검열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 시기 재판정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상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투쟁의 정치적 시·공간이 된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금서에 대한 이해도 초기와 이 시기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약컨대 이 시기를 경과하면서 도서(출판)검열의 핵심 주체가 공안기관으로 전이되고 국가보안법과 출판경찰의 시대가 재현된 것이다. 치안유지법/출판경찰제도의 체계를 통해 사상통제를 강화했던 식민지 출판경찰제도의 복사판이다.⁵⁷⁾ 문제는 그 기초가 1987년을 거치며 더 확대 강화된다는 점이다.

56) 각 기관의 서로 다른 좌경·용공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역사비평사, 1992, 162~165면 참조.

57) 일제강점기 출판경찰의 제도화 전반에 대해서는 정근식·최경희, 「도서관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 출판경찰의 제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103~169면 참조.

IV. 1987년 민주화, 책의 해방과 그 역설~결론을 대신하여

1987년 민주화의 성취는 냉전검열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냉전분단체제에서 장기간 은폐, 방기, 봉합, 왜곡되었던 냉전 금제(기)들의 실상이 비로소 공개되고 복원과 극복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40년 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당화했던 냉전검열체제 또한 총체적 파국을 맞게 되면서 “검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문화주체들의 보편적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창출된 것이다. 이 극적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책의 해방이다. 6·29선언의 후속조치인 예술자율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출판활성화 방안(1987.10.19)을 통해서 본격화된다. 판금(종용)도서의 해제, 납본필증 즉시 교부, 출판사등록 개방과 함께 그동안 판금도서로 묶였던 650종의 도서 가운데 431종이 해금되고 181종이 사법심사의 회된다.⁵⁸⁾ 이어 1988년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계기로 40년 동안 냉전금기의 대명사로 봉인되었던 (납)월북작가·예술가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되었으며(1988.7.19, 정치·사상적 복권은 불허) 사법 의회되었던 공산권작가 작품 또한 해제되기에 이른다. 7·7선언의 여파로 미수교공산국가로까지 사상성 없는 예술작품이 전면 개방되면서 수입, 공연, 번역이 가능해졌다. 또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고 문화예술 차원의 남북교류가 추진되는 가운데 최후의 사상적 금기영역이던 북한관련 책도 무조건 금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책의 해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20년 만에 마르크스의 『자본』이 한국에서 완역 출판된 것이 이 시기 책의 해방을 상징해준다.⁵⁹⁾

58) 유념할 것은 판금도서가 공식적으로 해금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1987년 대규모 금서 해제는 비매품에서 매품(상업적 시판)으로의 “수평이동”이라는 진전에 불과하며 대중적 수용은 사회적 인식의 성숙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370면.

59) 공산주의이론의 원전으로 평가되는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번역 출판이 1987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자본』 1부가 1947년 최영철·전석담·허동의 공동번역으로 초역된 바 있고(서울출판사 간행, 러시아판을 번역한 중역본으로 1~2권만 나오고 완간되지는 못함), 북한에서는 1950년대(조선노동당사) 및 1980년대(사회과학사전출판사)에 각각 완역본이 출판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처음 완역이 시도된다. 1987년 이론과 실천에서 『자본』(전3권, 김영민 역, 독일어판 마르크스·엔겔스전작집 번역)이 최초의 한글판으로 완간되었으며(1990년에 전 9권으로 완성, 번역자 김영민은 실존인물이 아니라 운동권 학생들의 집단번역으로 추정됨), 1990

그러나 책의 해방 곧 사상의 해방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문화민주화의 최대 화두로 대두된 검열제도의 폐지와 이의 법적 근간인 국가보안법 및 관련 문화악법의 폐지 또는 개정, 공문을 비롯한 검열기구의 폐지 등이 보수대연합의 탄생으로 귀착된 제도적 민주주의의 좌절과 대응해서 모두 좌초·무산됨으로써 책의 운명은 더욱 강도 높은 검열의 칼날에 좌우되는 역설적 상황으로 내몰린다. 특히 책은 문화공보부(문화부)의 손을 떠나 공안당국의 손아귀에 갇힌다. 1985년에 개시된 국가보안법과 사법 처분 중심의 도서검열이 전면화·극대화된 것이다. 문공부가 휘두른 등록제와 납본제가 변형되어 유지되나 그 본래의 사전역제 기능이 미미한 가운데 문공부는 도서검열에 있어서만은 사법심사 의뢰의 기관으로 격하된다. 문공부(문화부) 출판과가 검찰에 사법 의뢰한 도서는 1987년 10종, 1988년 51종, 1989년 85종, 1990년 39종 등 총 185종인데, 1987년 10월 사법 의뢰한 181종까지 합치면 366종인 셈이다. 따라서 1987년 이후의 도서검열체계는 도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법심사의뢰제도가 제6공화국에서 정착된 가운데 <문공부(문화부)의 사법심사 의뢰->검찰의 공식 기소->법원의 판결>로 재편·구축되었다.⁶⁰⁾

단, 이 절차가 항상 지켜진 것이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좌익출판물에 대한 단속(음성적 판매금지 조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법심사 역할을 편의상 법원이 아닌 검찰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⁶¹⁾ 이튿만

년 비봉출판사의 『자본론』(전5권, 김수행 역, 영문판대역본)과 백의의 『자본론』(전6권, 북한번역본)이 동시 출간됨으로써 120년 만에 한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반공금지 자본론 1세기 만에 완역」, 『한겨레』, 1990.6.5). 이론과 실천의 『자본론』은 출간 직후 번역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1987.8), 발행인(김태경)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으며(소지한 독자는 구속), 사법심사의뢰 도서로 분류(1987.10.19.) 및 사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되었다(1990). 전석담 등의 번역 『자본론』도 문제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유네스코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자본』을 인류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60) 따라서 “1987년 10월 19일 출판활성화 조치 이후 판매금지 처분한 도서는 없다”는 문공부장관의 국회 답변은(1988.9) 형용모순이었다. 이 시점 이후 문공부가 사법심사를 의뢰하는 기능으로 권한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이나 그 이전에도 판금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존의 판금조치가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단지 시판금지를 종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문공부의 일관된 주장은 시판금지 종용이 사실상 판금조치의 효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61) 「5공 회귀 공안기관의 출판탄압」, 『한겨레』, 1990.12.1.

바꾼 채 판금도서제도가 검찰에 의해 상시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1989년 11월 검찰이 발표한 좌익출판물 목록(103종)은 법원의 이적성 판결이 있기 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다.⁶²⁾ 이 같은 도서검열 체계는 불온출판물에 대한 국가권력(공안당국)의 포괄적인 자의성이 전폭적으로 개입될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검찰이 불온에 대한 주된 심판자로 군림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공안기관이 사상검열을 주도한 예로는 1989년 좌경세력 척결을 이유로 공안합동수사본부(안기부, 보안사, 검·경)를 설치하여 재야인사 및 단체에 대한 연행 및 구속, 북한원전 등 좌경이념서적에 대한 압수, 민주세력에 대한 좌경·용공 공세를 통한 사상통제 시행이다. 사실상의 계엄 상태를 조성해 공안합수부가 만능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적도서가 양산된다.⁶³⁾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로 적법성 시비가 거세지자 77일 만에 해체되지만(443명 사법처리를 성과로 보고), 사안(범)별로 합동수사반을 편성·운영하겠다는 좌경 폭력세력 척결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⁶⁴⁾ 특히 공안합수부를 지휘한 것이 안기부였고, 안기부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발동하여 사상검열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박정희체제 검열의 심층과 정점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재판인데, 차이가 있다면 중앙정보부가 절차상 합법적 검열자였다면 안기부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빅 브라더였다는 정도다.⁶⁵⁾

공안합수부뿐만 아니라 좌경척결을 안기부가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안기부가 민정당 의원세미나에 제출한 ‘국내좌경실상 자료집’을 통해서다(1989.6.28.). 126개 사회단체를 좌경세력 침투조직으로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

62) 「검찰 발표 ‘좌익출판물’ 목록」, 『한겨레』, 1989.11.30. 이 목록은 대검이 전국 지검에 시달한 ‘좌익출판물·유인물 단속지침’이다. 103종 가운데 북한관계의 책, 구체적으로는 북한원전 재출간, 북한 1차 자료를 토대로 엮은 책이 76종을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원전에 대한 탄압이 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부의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63) 「위헌적 공안합수부는 해체돼야」(사설), 『한겨레』, 1989.4.18. 1988년 9월~89년 9월 사법심사의뢰 대상도서 목록 및 공안합수부가 발표한 이적도서 51종(1989.4.9.) 목록은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제6공화국과 출판탄압』, 1990, 31~60면 참조.

64) 「‘공안합수부 77일’ 무엇을 남겼나」, 『동아일보』, 1989.6.19.

65) 이봉범,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 6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368~373면 참조.

고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인물을 1만5백여 명으로 추산해(학원 6천5백 명, 노동계 2천5백 명, 출판문화교육계 1천 명, 재야·종교계 8백 명 등) 제시한 가운데 이들 핵심세력의 투쟁목표가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화 통일에 있음을 밝히며 척결의 당위성을 천명한 바 있다.⁶⁶⁾ 좌경세력 발호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용공서적이 지목되고 출판계에 침투한 좌경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개진되는 가운데⁶⁷⁾ 이 자료집 배포 후 돌베개, 온누리 등 출판사 대표 연행과 대학서점들의 압수수색이 더 한층 기승을 부렸다. 이 같은 흐름은 냉전기 사상검열의 법적 기제였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1990.4.2.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을 내린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위헌 시비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사실상 열어놓음으로써 가속된다.⁶⁸⁾ 책의 운명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부과한 테두리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민주화 성취 그리고 탈냉전의 세계사적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열체제는 전 근대적으로 퇴행했다. 일제의 출판경찰제도가 부활하여 책의 생사를 좌우하는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현실, 지독한 역설이다. 이 역행의 다른 한쪽에서는 냉전기 검열의 한 축이던 외설검열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광수 필화사건(1992)을 계기로 가장 음란한 싸움이 사회적으로 본격 전개된 것이다. 음란에 대한 疑似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고한 사회적 배제와 공모의 광풍이 이 금기에 맞선 한 작가에게 집중 포화를 가했다. 1969년 소설 『반노』에 대한 외설 시비에서 한

66) 「전민련 등 126개 단체 좌경 침투」, 『동아일보』, 1989.6.28.

67) 「좌익 침투의 심각성」(사설), 『경향신문』, 1989.6.29.

68) 6·29선언 이후 실질적 (문화)민주화의 최대 관건은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1988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189개의 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재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진보적 사회문화단체도 완전한 사상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나(가령,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및 자유로운 남북교류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한 14개 단체의 문화예술인공동서국선언문 채택, 1989.4.24) 결국 ‘한정 합헌’이란 부분적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지는 파행을 거치며 냉전분단을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이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사상통제의 법적 장치로 군림하기에 이른다. 최근(2023.9)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합헌 결정이었다.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술/외설의 법적 경계 싸움, 책의 해방을 가로막는 또 다른 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1997년 4월 10일 폐지된 공륜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명분을 얻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문화공안정국의 추세 속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외설의 칼날을 다시금 강도 높게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공륜의 권한과 위상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수지대이나 군이 구독 중지시킨 불온간행물 도서목록도 엄연히 사회 한 쪽에서 책의 해방을 짓누르고 있었다.⁶⁹⁾ 1987년 냉전검열의 파국이 민주화의 값진 성취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40년 냉전검열이 종언을 고했으며 그 종언이 종언이 아닌 출판경찰제도의 망령이 부활하는 반동적 역사를 내포한 또 다른 전환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여파는 다기한 변용을 거쳐 최근 책 나아가 사상의 관찰권을 두고 사회 내부의 이념 전쟁이 한층 거세지는 정세와 맞물려 특히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금서지정 요구가 빈번해지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⁷⁰⁾

투고일: 2024.01.10

심사일: 2024.03.06

게재확정일: 2024.03.13

69) 1992년 4월 국회에서 폭로된 군 지정 불온도서(간행물)는 공산주의 고무 도서(214종), 폭력정당화 도서(80종), 현실왜곡·안정저해 도서(175종), 북한원전(32동), 용공이적도서(44종) 등 총 574종이었고, 창작과비평사, 실천문학사, 돌베개, 풀빛 등 24개 출판사를 문제서적 발간 출간사로 적시하고 있다(목록은 『한겨레』, 1992.4.25, 5면). 대체로 1985년 및 1987년에 판금 해제된 도서들이다. 국방부가 이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작성한 <이적 및 배포금지 도서목록>(1991.8 작성)을 열람시키는데, 이 목록에는 판례상 이적도서(168종), 판례상 이적유인물(459종), 국내 배포금지 도서(64종), 이적도서(11종), 이념도서(143종), 반정부 및 군 비판도서(102종), 문제 단체·대학·종교 유인물(19종), 음반 및 테이프(11종) 등 총 97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이 국민 기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였던 셈이다(「군인도 알 것은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 1992.4.25).

70) 이에 관해서는 이봉범, 「검열/금서, 책의 해방」,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문화』 693, 2023.10, 27~40면 참조.

참고문헌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10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언론·노동편(V)』, 국가정보원, 2007.10
김수행, 「‘들어라 양키’로 처음 만난 마르크스」, 『한겨레』, 1993.2.22
대검찰청,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공안자료집 제20권)』, 1996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50년사』, 2007
문화부, 『출판정책자료집』, 문화부, 199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역사비평사, 1992
법원·검찰,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도서, 유인물) 목록』, 1999
윤재걸, 「금서」, 『신동아』, 1985.6.
한국출판문화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운동사: 1970년대 말~1990년대 초』, 2007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탄압백서』, 1987.6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제6공화국과 출판 탄압』, 1990

강인덕,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경인문화사, 2022
김언호, 『책의 탄생(II)』, 한길사, 1997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김지하 외, 『한국문학필화작품집』, 황토, 1989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1945~2010』, 문예출판사, 2015
이봉범, 『한국의 냉전문화사』, 소명출판, 2023
이성욱, 『김추자, 선데이서울 계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이중한 외,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조상호,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나남출판, 1999
B. N. 포노말료프 저, 편집부 역, 『소련공산당사(1~6)』, 기획출판 거름, 1991~1992
C. W. Mills 저, 신일철 역, 『들어라 양키들아: 쿠바의 혁명』, 정향사, 1961
Edward Hallett Carr 저, 신계륜 역, 『러시아혁명~레닌에서 스탈린까지, 1917~1929』, 나남출판, 1983
E. H. Carr 저, 이지원 역, 『볼셰비키 혁명사』, 화다출판사, 1985
I. 벌린 저, 신복룡 역, 『칼·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 평민사, 1982
J. P. 사르트르 저, 최성민 역, 『더러운 손』, 양문사, 1960
K.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1990

-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 안지혜,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1985~2002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 _____,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대동문화연구』 11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 _____,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 6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 _____, 「검열/금서, 책의 해방」, 『출판문화』 693,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 정근식·최경희, 「도서관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제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 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 진선영, 「폭로소설과 백주의 테러-1952년 『자유세계』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 천정환, 「1980년대 후반 한국 출판문화의 전환~‘세계화’로서의 민주화·자유화」, 『반교어문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The transformation, catastrophe, and reorganization of Cold War censorship — 1980s Publication censorship and the fate of Books

Lee, Bong-beo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tore the truth of the catastrophe and reorganization of the Cold War censorship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ation censorship and prohib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ld War censorship history. It is a macroscopic bird's eye view of the cultural history of contemporary books. Censorship in the Fifth Republic used an authoritarian social and cultural control policy in the 1970s while implementing new censorship techniques at the same time as the Yushin regime's censorship system was inherited. However, this basis of censorship was difficult to carry ou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such as the detente trend of the global Cold War system, the mounting pressur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the rising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the widespread demand for cultural democracy, and the disturbance of the censorship system caused by the spread of counter-media, including Mook. Reinforcement of censorship and replacement and repetition of flexibility were inevitable. This not only weakens the legitimacy of censorship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o-cultural control, but also leads to a total catastrophe of Cold War censorship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point that typically reveals all of these processes is the way of existence of banned book. The main method of publication censorship at the time was media control using the publisher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system. It was a strategy to collapse the socio-cultural foundation of text production. As a result, the golden age of the book arrives. In particular, with the withdrawal of the appeasement phase in 1985, public security agencies are leading the publication censorship, and the number of serious slip of the pen and judicial benefits the enemy books increases rapidly. It was a copy of

the colonial publication police system. It was a process to expand the scope for the comprehensive arbitrariness of the public security authorities to be fully involved in disturbing publications. Since then, publishing control has shifted toward intensively crushing the latter anti-establishment based on the separatism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lass movement by reducing and concentrating the instability in the fi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the Cold War ideological war with radical revolutionary theory and radical leftist thinking theory books. The trend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since 1987. At the center of the process of conservatively reorganizing the censorship system of the Sixth Republic,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publishing police system of public security agencies existed. In short, the mass production of forbidden books in the 1980s was a product of the times when the objective conditions of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ations intersected by the indiscriminate designation of prohibited book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riteria for judging left-wing and publication by censors, the surge in judicial transfer books due to the revival of the publishing police system, and the intended anti-censorship of publishing entities in response. This ambivalence of prohibition and diversity in production channels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history of contemporary books.

Key Words : Cold War censorship, banned book, benefits the enemy book, publication censorship, registration system, presentation system, publishing police system, National Security Law, book, pro-communist, leftist thinking,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Korea Public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rebellious publications, bookstore